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292 |
|----------|------|

2024년 12월 1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- 상정일자 :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
(2024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흥미)

1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 조항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부재하여 교육자원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- 이에, 현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공헌을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포상 규정 신설 (조례 제6조의2)
 -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 ‘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’ 을 규정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심혁보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92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는 2016년 교육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22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

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(2022.4.21.)됨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- 현재는 서울시 소재 학생 및 학교 중심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, 49개의 봉사단, 897명의 봉사자들이 사업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사업별 구분 (2023.12.31. 기준)

(단위: 단, 명, 기관)

| 구 분 | 봉사단 | 봉사자 | 봉사활동 수혜기관 | | | | | 계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|
| | | | 유 | 초 | 중 | 고 | 기타 | |
| 센터역점사업 | 4 | 325 | 0 | 91 | 9 | 1 | 1 | 102 |
| 대외·부서협력사업 | 12 | 246 | 0 | 27 | 0 | 31 | 7 | 65 |
| 공모사업 | 21 | 225 | 0 | 32 | 8 | 5 | 13 | 58 |
| 강동송파교육지원청사업 | 12 | 101 | 0 | 47 | 0 | 0 | 1 | 48 |
| 계 | 49 | 897 | 0 | 150 | 17 | 37 | 21 | 273 |

-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자원봉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을 위해 제6조의2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자원봉사의 기본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2조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

령1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

- 동 개정조례안이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조례안의 취지상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1)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(포상)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「상훈법」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포상)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|---|
| 〈신설〉 | 제6조의2(포상)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 |